



# 시 보



제1660호 2024. 9. 30.(월)

## 고 시 · 공 고

- 국가기초구역 변경 고시----- 2
-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5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
-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안) 입법예고----- 32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 국가기초구역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우리시 국가기초구역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 목 포 시 장

###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하여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 곤란하여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전국단위 구역 관리 제도 필요
-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나누는 구역
-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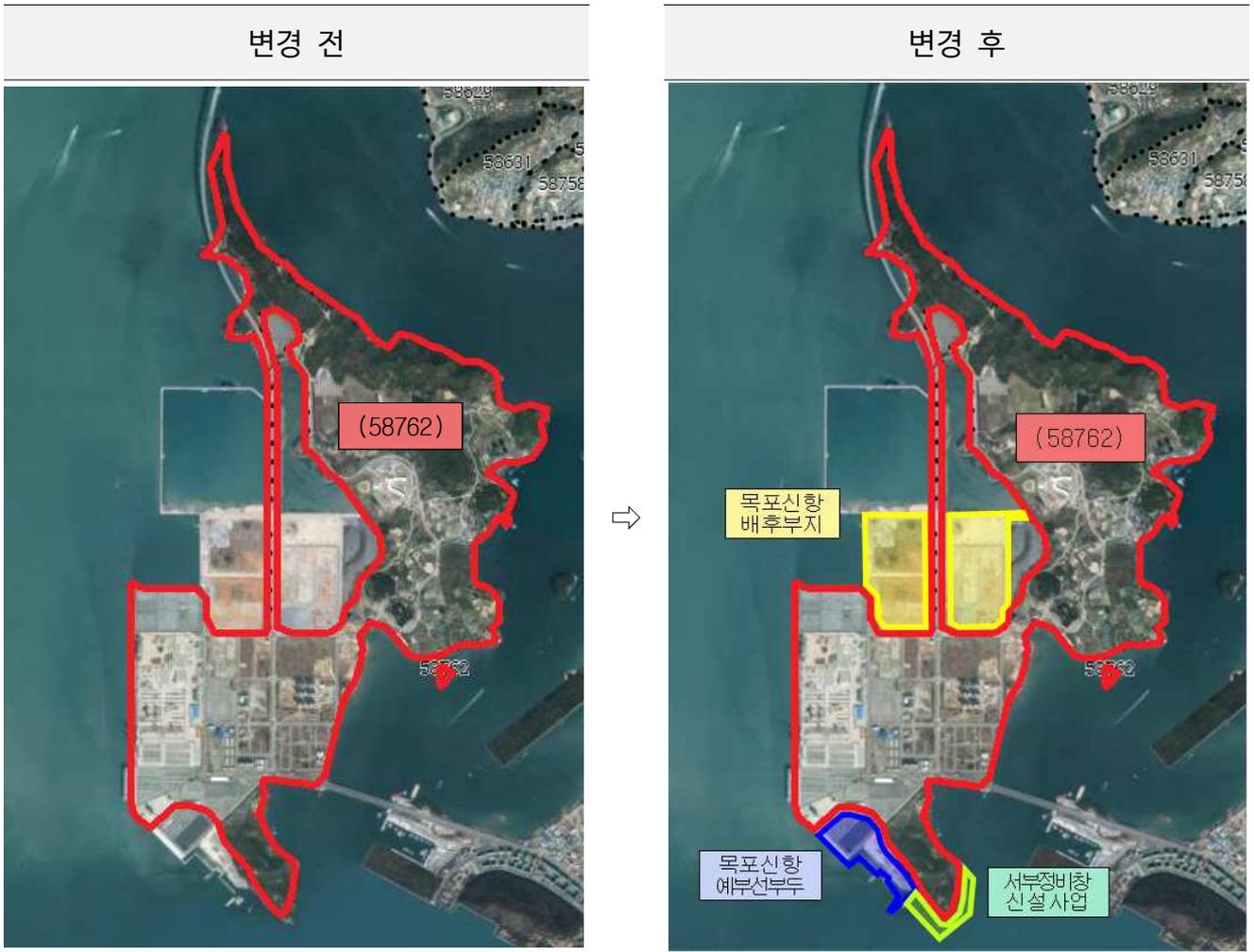
### 2.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목포시	0	1	0	36

### 3. 변경 사유

- 공유수면 매립준공 및 매립예정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사항 반영

#### 4. 변경 전·후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 번호 (58762)



※ 기존 국가기초구역(58762)의 경계를 매립준공·매립예정 지역을 포함하도록 변경

5. 국가기초구역 고시일: 2024. 9. 30. (월)

6. 국가기초구역 변경 전·후 도로명주소와 지번 현황 조서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61-270-8633) 문의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초구역 변경 전 도로명주소 조서

시도명	시군구명	기초구역번호	법정읍면동	도로명주소	비 고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대로 1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대로 2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대로 2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1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11-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19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19-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3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3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5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5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6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7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8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8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95-1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95-2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95-2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95-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0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1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1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18-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18-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2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4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5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53-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5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3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37-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5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6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7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8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8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83-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9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9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0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0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2-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22-6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4-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4-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4-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4-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6-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6-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6-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6-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6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8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8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18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0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2-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2-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2-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2-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2-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2-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2-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3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6-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6-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6-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6-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6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27-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3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30-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45-2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6-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6-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6-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96-4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99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4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44-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6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75-4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8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8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9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9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46번길 1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46번길 1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12-1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1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2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20-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2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2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3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4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4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94번길 2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94번길 4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94번길 7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 1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 1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21번길 16-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21번길 16-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21번길 8-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45-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45-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48-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48-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59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1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2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44-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7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81번길 37	

## 국가기초구역 변경 후 도로명주소 조서

시도명	시군구명	기초구역번호	법정읍면동	도로명주소	비 고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대로 1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대로 2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대로 2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1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11-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19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19-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3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3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5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5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6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7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8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8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95-1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95-2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95-2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195-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0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1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1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18-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18-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2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4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5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53-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25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3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37-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5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6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7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8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8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83-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9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길 9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고하도안길 99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4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44-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6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75-25	추가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75-4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8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8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9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 29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46번길 1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46번길 1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12-1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18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2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20-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2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2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3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4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4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76번길 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94번길 2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94번길 4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신항로294번길 7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 1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 1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21번길 16-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21번길 16-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21번길 8-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45-2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45-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48-4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48-7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33번길 59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15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23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44-1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6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57번길 70	
전라남도	목포시	58762	달동	허사로81번길 37	

#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0.

목 포 시 장

## 1. 개정 이유

- 상위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2019. 10. 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 연장(안 제20조의2항)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4. 9. 30. ~ 2024. 10. 21.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1일까지 목포시장(청년인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791), 직접방문 등

다.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청년인구과(☎061-270-8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운영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0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5년----- ③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0.

## 목 포 시 장

### 1. 개정 이유

- 목포어울림도서관 주말 운영시간을 상황에 맞게 정비하여 도서관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도모
  -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실시 대비 평가대상 법령 개정
    - 상위법령(도서관법)에서 정의한 용어 적용
-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17(2024. 3. 7.)

### 2. 주요 내용

- 목포어울림도서관 이용시간 일부 개정(안 별표2)
-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실시 대비 평가대상 법령 개정
  - 상위법령(도서관법)에서 정의한 용어 적용(안 제24조)

###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5. 관련법령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 8. 입법예고 : 2024. 9. 30. ~ 10. 20.(20일간)

##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0일까지 목포시장(인재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로31 목포어울림도서관 인재육성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6), 직접방문 등

##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인재육성과(☎061-27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 소속으로” 를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별표2]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도서관 이용시간 (제5조 관련)

도서관명	시 설 명	이용시간	비고
시립도서관	자유열람실 · 고시실, 종합자료실	09:00 ~ 22:00	
	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	09:00 ~ 18:00	
어린이도서관	열람실	09:00 ~ 18:00	
	어린이극장	09:00 ~ 22:00	
영어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 ~ 18:00	
	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	09:00 ~ 22:00	
어울림도서관	일반자료실, 멀티미디어실	평일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 ~ 18:00
		주말	
	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평일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 장난감도서관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b>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b>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도서관 이용시간 (제5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도서관명</th> <th style="width: 40%;">시 설 명</th> <th style="width: 20%;">이용시간</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시립 도서관</td> <td>자유열람실· 고시실, 종합자료실</td> <td>09:00~22:00</td> <td></td> </tr> <tr> <td>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td> <td>09:00~18:00</td> <td></td> </tr> <tr> <td rowspan="2">어린이 도서관</td> <td>열람실</td> <td>09:00~18:00</td> <td></td> </tr> <tr> <td>어린이극장</td> <td>09:00~22:00</td> <td></td> </tr> <tr> <td rowspan="2">영어 도서관</td> <td>종합자료실</td> <td>09:00~18:00</td> <td></td> </tr> <tr> <td>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td> <td>09:00~22:00</td> <td></td> </tr> <tr> <td rowspan="3">어울림 도서관</td> <td>일반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리딩스테어</td> <td>09:00~22:00</td> <td></td> </tr> <tr> <td>어린이도서관</td> <td>09:00~18:00</td> <td></td> </tr> <tr> <td>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td> <td>09:00~22:00</td> <td></td> </tr> </tbody> </table> <p>※ 장난감도서관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름.</p>	도서관명	시 설 명	이용시간	비 고	시립 도서관	자유열람실· 고시실, 종합자료실	09:00~22:00		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	09:00~18:00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	09:00~18:00		어린이극장	09:00~22:00		영어 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18:00		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	09:00~22:00		어울림 도서관	일반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리딩스테어	09:00~22: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09:00~22:00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도서관 이용시간 (제5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도서관명</th> <th style="width: 40%;">시 설 명</th> <th style="width: 20%;">이용시간</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시립 도서관</td> <td>자유열람실· 고시실, 종합자료실</td> <td>09:00~22:00</td> <td></td> </tr> <tr> <td>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td> <td>09:00~18:00</td> <td></td> </tr> <tr> <td rowspan="2">어린이 도서관</td> <td>열람실</td> <td>09:00~18:00</td> <td></td> </tr> <tr> <td>어린이극장</td> <td>09:00~22:00</td> <td></td> </tr> <tr> <td rowspan="2">영어 도서관</td> <td>종합자료실</td> <td>09:00~18:00</td> <td></td> </tr> <tr> <td>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td> <td>09:00~22:00</td> <td></td> </tr> <tr> <td rowspan="6">어울림 도서관</td> <td rowspan="2">일반자료실, 멀티미디어실</td> <td>평일</td> <td>09:00~22:00</td> </tr> <tr> <td>주말</td> <td>09:00~18:00</td> </tr> <tr> <td rowspan="2">어린이자료실</td> <td>평일</td> <td>09:00~18:00</td> </tr> <tr> <td>주말</td> <td>09:00~18:00</td> </tr> <tr> <td rowspan="2">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td> <td>평일</td> <td>09:00~22:00</td> </tr> <tr> <td>주말</td> <td>09:00~18:00</td> </tr> </tbody> </table> <p>※ 장난감도서관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름.</p>	도서관명	시 설 명	이용시간	비 고	시립 도서관	자유열람실· 고시실, 종합자료실	09:00~22:00		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	09:00~18:00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	09:00~18:00		어린이극장	09:00~22:00		영어 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18:00		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	09:00~22:00		어울림 도서관	일반자료실, 멀티미디어실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주말	09:00~18:00	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도서관명	시 설 명	이용시간	비 고																																																																										
시립 도서관	자유열람실· 고시실, 종합자료실	09:00~22:00																																																																											
	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	09:00~18:00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	09:00~18:00																																																																											
	어린이극장	09:00~22:00																																																																											
영어 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18:00																																																																											
	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	09:00~22:00																																																																											
어울림 도서관	일반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리딩스테어	09:00~22: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09:00~22:00																																																																											
도서관명	시 설 명	이용시간	비 고																																																																										
시립 도서관	자유열람실· 고시실, 종합자료실	09:00~22:00																																																																											
	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	09:00~18:00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	09:00~18:00																																																																											
	어린이극장	09:00~22:00																																																																											
영어 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18:00																																																																											
	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	09:00~22:00																																																																											
어울림 도서관	일반자료실, 멀티미디어실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주말	09:00~18:00																																																																										
	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0.

### 목 포 시 장

#### 1. 개정 이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의 규정사항을 신설하여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별도 구성에 따른 정비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대행 규정 삭제 (안 제10조)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안 제13조~안 제14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회의 운영 (안 제15조~안 제16조)
-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

##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4. 9. 30. ~ 2024. 10. 20.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0일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목포시의회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제13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하며,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등 설치)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서**“조례”를 “**단서에서**“조례”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1항제2호 중 “**추진계획**”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제1항에서**”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수당 등)”을 “(수당 등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 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li> <li><u>2.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u></li> <li><u>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u></li> <li><u>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u></li> </ol>
<p><u>제3조 (생 략)</u></p> <p><u>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② (생 략)</u></p> <p>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4항 <u>단서</u></p>	<p><u>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u></p> <p><u>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u></p> <p>③ ----- ----- <u>단서에서 “조</u></p>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제5조 ~ 제8조 (생략)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② (생략)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례-----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제1항에서 -----  
-----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 <신 설>

제13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

<신 설>

<신 설>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하지 아니하며,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등 설치)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

제12조(수당 등) (생략)

<신설>

제13조·제14조 (생략)

<신설>

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준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제19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20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0.

## 목 포 시 장

### 1. 제정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승)」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제2의2호

## 5.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부패영향분석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6. 입법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1. 20. [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4일까지 목포시장(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FAX(061-270-3259),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061-270-8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목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점검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목포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 목 포 시 장

#### 1.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목포시 등록규제 일제 정비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3.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2건)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방법 개정(안 제7조)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시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 정보체계에도 공고하도록 규정
-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안 제48조)
  -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까지 완화

## □ 목포시 등록규제 일제 정비(5건)

### ○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 규정 삭제(안 제13조의3)

-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반하는 등록규제의 정비에 해당하여 폐지 대상이므로 금회 삭제

### ○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29조)

- 특화경관지구 내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등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완화

### ○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 비율 완화(안 제36조)

- 종전에는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지면적의 30% 이상 확보하도록 완화

###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43조)

-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을 허용하는 등 건축제한 완화
- 종전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네거티브 방식)을 상위법에 맞춰 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포지티브 방식)으로 개정

### ○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안 제46조)

- 용도지구명만 명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등록규제의 정비에 해당하여 폐지 대상이므로 금회 삭제

## □ 현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2건)

### ○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57조)

-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 ○ 목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변경(안 제68조)

- 목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원 구성 기준 변경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의견없음[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 안 제7조, 제29조, 제36조, 제43조, 제48조

**8. 예산 상황**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9. 입법예고 기간** : 2024. 9. 30. ~ 10. 20.(20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12.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20.까지 목포시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9),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도시디자인과)

###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전화 : 061-270-8414, FAX : 061-270-3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2. 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제13조의3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4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을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을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1호의 노유자시설”을 “제8호의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2호의 수

련시설”을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7호의 공장”을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기존 공장의 증·개축은 허용한다)
  - 가. 선박 관련 제조·수리시설
  - 나. 수산물 가공·제조시설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

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1호 중 “생산녹지지역에”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로, “60

퍼센트 이하”를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 중 “도시재생관련업무 담당국장”을 “안전건설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분의1”을 “3분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시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청과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u></p> <p>1. <u>&lt;신 설&gt;</u></p> <p>2. <u>&lt;신 설&gt;</u></p> <p>3. <u>&lt;신 설&gt;</u></p> <p>② ~ ③ (생략)</p>	<p><u>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u></p> <p>1. <u>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u></p> <p>2. <u>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u></p> <p>3. <u>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u></p> <p>① <u>&lt;삭제 2020.5.25.&gt;</u></p> <p>② <u>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u></p>	<p><u>제13조의3 &lt;삭 제&gt;</u></p>

<p><u>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u></p> <p>2. <u>부지가액 :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u></p> <p>③ <u>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b>제2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생략)</b></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p> <p>2. (생략)</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u>골프연습장</u></p> <p>5. ~ 18. (생략)</p>	<p><b>제2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현행과 같음)</b></p> <p>1. &lt;삭제&gt;</p> <p>2. (현행과 같음)</p> <p>3. &lt;삭제&gt;</p> <p>4. ----- ----- ----- <u>골프연습장, 안마시설소, 단란주점</u></p> <p>5. ~ 18. (현행과 같음)</p>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① -----

-----  
-----  
-----

30퍼센트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있다. -----

-----  
-----  
-----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규모점포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  
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설  
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6.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  
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  
장·공회당

7. -----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은 -----

8. ----- 제8호의  
운수시설

9.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  
구소 및 도서관

11.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설치  
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  
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  
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  
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하  
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기존 공  
장의 증·개축은 허용한다)

가. 선박 관련 제조·수리시설

나. 수산물 가공·제조시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  
의 야영장 시설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p>18. &lt;신 설&gt;</p> <p>19. &lt;신 설&gt;</p> <p>20. &lt;신 설&gt;</p>	<p>및 세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p> <p>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p> <p>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p> <p>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p>
<p>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장은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도지구</li> <li>2. 개발진흥지구</li> <li>3. &lt;삭제 2015. 8. 10&gt;</li> <li>4. 보호지구</li> <li>5. &lt;삭제 2015. 8. 10&gt;</li> <li>6. &lt;삭제 2015. 8. 10&gt;</li> </ol>	<p>제46조 &lt;삭 제&gt;</p>
<p>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10. (생 략)</li> </ol>	<p>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10. (현행과 같음)</li> </ol>

<p>11. <u>생산녹지지역에</u>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u>60퍼센트 이하</u></p> <p>가. ~ 다. (생략)</p> <p>12. (생략)</p>	<p>11. <u>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u> ----- ----- : <u>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u></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b>제57조(구성) ①</b> (생략)</p> <p>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u>도시재생관련업무 담당국장</u>,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 2. (생략)</p> <p>③ ~ ⑥ (생략)</p>	<p><b>제57조(구성) ①</b> (현행과 같음)</p> <p>② ----- ----- ----- <u>안전건설관련업무 담당국장</u>,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b>제68조(구성) ①</b>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위원회 위원 중에서 <u>2분의1</u> 미만</p> <p>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u>2분의1</u> 이상</p> <p>④ (생략)</p>	<p><b>제68조(구성) ①</b> ----- -----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u>3분의2</u> -----</p> <p>2. ----- <u>3분의1</u> -----</p> <p>④ (현행과 같음)</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